

외국인 입학규정(3-5-23)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외국인 유학생 입학규정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은 본 대학교 학칙 제10조부터 제20조에 의거 규정된 입학 및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본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입학에 관한 사항은 학칙 또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2장 입 학

제3조(입학시기 및 허가) ①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초(신입학 및 재입학, 편입학) 21일 이내로 한다.(개정 2017.01.26.)

② 어학연수생은 각 과정의 개시 10일 이내로 한다.

③ 입학허가는 총장이 허가한다.

제4조(입학자격)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.

1.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
2.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
3.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전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4.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
제5조(지원절차) ①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입학지원 절차와 모집에 관한 사항은 모집시마다 정하여 발표한다.

제6조(선발고사) 입학자의 선발은 다음 각 호의 전형자료를 종합하여 사정하되, 필요한 경우 이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
2.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
3. 실기고사 성적(예.체능계)
4. 면접고사
5. 논술고사
6. 기타 학생선발 필요사항

제7조(입학절차) ① 입학허가 예정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, 등록금 납부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기일 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할 수 없다.

제8조(보증인) ① 보증인은 부형, 기타 인으로서 학생의 재학 중 학비, 기타 신상에 관련되는 일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라야 한다.

② 보증인의 주소와 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보증인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새 보증인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편입학 자격 및 선발) ① 제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전급학년 수료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
②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제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다.

③ 편입학자는 실력을 고사한 후 선발하되, 일시 및 방법 등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.

④ 학사 편입학 사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10조(재입학) ①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

② 재입학생이 이미 이수한 학점은 이를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③ 재입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11조(재·편입학 자격제한) 본교 또는 전적대학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.

제12조(등록) ① 학생은 소정 기일 내에 소정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.

② 등록의 절차는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필함으로써 완료된다.

③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